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10.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